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정치 이론과 실무를 연마하여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정치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칭함)내에 둔다.

제4조(구성)

1. 본회의 총학생회, 기수별 학생회를 구성한다.(개정 2018.12.18.)
2. 기수별 학생회는 당해 기수에 관계되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회지 및 논문집 발간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5. 장학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수석 및 부회장 약간 명, 기수별 회장 각 1명
4. 감 사 : 1명
5. 사무총장 : 1명 (신설 2018.12.18.)
6. 유학생대표 : 1명 (신설 2018.12.18.)
7. 원우회장이 원우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임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10조(선임) 총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총학생회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단, 해당 기수에서 합의할 경우에는 1인을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 전 학기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총학생회장이 고문을 추대한다.
3.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다만, 기수별 부회장은 각 기수별 학생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4.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개정 2018.12.18.)
5. 사무총장 및 총무국장, 학술국장, 홍보국장, 조직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개시일은 당해 연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12조(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고 문 : 본회에 자문 및 지도를 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본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기수별 부회장은 기수별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감 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감사보고 한다.
5. 사무총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18.)
6. 유학생대표 : 본회와 유학생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한다. (신설 2018.12.18.)

제4장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정기총회는 매학기 학기말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단, 임시총회의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 원우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의해 원우 전체가 공유하는 SNS 단톡방에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사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5조(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은 총회 소집권자에게 서류로 위임할 시 참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2.18.)

제17조 (공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총회소집 공고를 본대학원 지정게시판 또는 원우회 SNS 단톡방(추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제9조의 임원 중에서 회장, 전임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4인(회장 지명), 감사, 사무총장, 유학생 대표 등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8.)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3.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직전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 이사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단, 임시이사회인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정에 의해 이사들이 공유하는 SNS 단톡방에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사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9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포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장 기별 학생회

제21조(임원) 기별원우회(학생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 명
3. 총 무 : 1명 (신설 2018.12.18.)
4. 유학생대표 : 1명 (신설 2018.12.18.)

제22조(선임)

기별원우회 회장은 기별원우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국장, 총무부장, 학술부장은 기별 학생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23조(임기) 본회 회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직무) 기별원우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회 장 : 기별원우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18.)

제25조(소집) 기별원우회장은 기별원우회를 수시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6조(의결정족수) 본회 회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7조(기능) 기별원우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별원우회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2. 기별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별원우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28조(등록 및 취임)

선출된 각기별 원우회 임원은 총원우회 및 본 대학원 교학과에 등록하여야하고 등록과 동시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재 정

제29조(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회비로 조성한다.

1. 학생회비 : 매학기 200,000원(단, 유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8.12.18.)
2. 기부금, 찬조금 및 보조금
3. 기타 지원금등의 수입

제30조(회계 및 감사)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며, 회계 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총무국장이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선 거

제31조 (후보자의 자격 및 절차)

1. 총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2.18.)
3. 기타 세부 사항은 해당학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32조 (선출방법)

1.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단, 총학생회장 등록 자격을 갖춘 기수에서 합의하여 1인을 추대할 경우에는 직접선거를 생략한다. (신설 2018.12.18.)

제33조 (당선자의 의무)

제32조 선거에 있어 선거에서 당선한 당선자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정치대학원 원우를 대표하는 바 그 품위와 인격을 정진시켜 정치대학원원우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한다.

제34조 (선관위 구성 및 선거운동기간)

1. 선거의 엄정한 중립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총원우회장이 지명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 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선거는 등록 마감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2. 단, 총학생회장 등록 자격을 갖춘 기수에서 합의로 1인을 추대할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당선자로 결정한다. (신설 2018.12.18.)

제9장 보 칙

제35조(경조사)

회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전체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에서는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내 축하 또는 위로한다. (개정 2018.12.18.)

제36조(동아리 등)

1. 본회 내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동아리 활동등 기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포상)

본회의 운영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고 본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 표창패, 공로패 등으로 포상한다.

제38조(일반적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